2018년 가평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4. 30. ~ 5. 4.(5일간)

○ 감사분야 : 2015년 4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 사 결 과			처 분 계 획						
			행정상 (건)		신분상 (명)			재정상 (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천원)	시정	주의	징계	경고	주의	회수	과태료
14건	12건 (52명)	1건 (200)	4	10	-	4	48	-	200

Ⅱ 주요 지적사항

(인사·행정)

① 2018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업무 소홀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내지 제25조(직장훈련 계획)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위 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술훈련 평가와 직장교육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방소방⊙ ◈◈◈은 2017.11.17. ~ 2018년 현재까지 소방행정팀에서 직장교육훈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함에 있어, 2018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무성적평정에 포함되는 중요사항인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가운데 직장교육 시기를 매월 또는 격월로 실시하기로 명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말 현재 단 1회만 실시 함으로써 매월 실시하는 경우 3회 또는 격월 실시할 경우 1회를 미실시 하는 등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을 소홀히 사실이 있다.

【관련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직장훈련의 실시) 내지 제25조(직장훈련 계획)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7조(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재난대응·안전)

① 수난구조대 소방정 종합훈련 미실시

- 본부 「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 제20조(훈련의 구분 등) 제1항에 의하면 “소방 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승무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위주로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1항의 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제1단계 훈련(정장 주관 기본훈련)은 분기 1회씩 연 4회 실시하며 훈련기간을 2일 이내로 하고, 제2단계 훈련(재난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 주관 종합훈련)은 연 1회 실시하며 훈련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현장대응단 지방소방☆ ★★★은 내수면 수난사고 발생 시 소방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 1회 수난구조대 소방정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2015년도 종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경기도소방정운영관리규칙」 제20조(훈련의 구분 등)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실시

- 본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화재경계지구, 자체소방대를 설치

하여야하는 사업소· 특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연 1회 이상,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필요시에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119안전센터 지방소방◇ ◆◆◆ 등 11명은 “2015. 6월 ~ 2018. 3월까지 소방활동 정보카드 일제정비 계획”을 추진하면서 필그림하우스 연수동 건물 등 3개소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짧게는 113일 길게는 158일 초과하여 대상물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였고, ♣♣♣ 건물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미실시 하였고, 또한 소방활동 정보카드 변경사항을 소방민원정보시템에 수정·입력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

③ 구급장비 일일·월간점검 미실시 등

- 「119구급차 영상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 제20조(일상점검)에 의하면 “운영담당자는 기기 등을 확인하여 녹화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기기 고장 등 녹화가 불능한 경우에는 즉시 정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근무일지 등에 장애발생 등의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지침 제21조(관리 감독)에 의하면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구급대에서 관리되는 CCTV 및 영상정보의 저장·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당해 구급대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 (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제2항에 의하면 “장비운용자가 제조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밖의 장비는 소방 장비 일일점검·정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재난대응과-10333(2013.06.11.)호 「구급품질개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기록지 작성지침」 및 재난대응과-1744(2015.1.22.)호 「119감염관리실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알림」에 근거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 현장대응단 구급업무 담당자 지방소방△ ◎◎◎ 등 2명은 6개대 구급차에서 관리·운영중인 CCTV 및 영상정보의 저장·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2015. 4월 ~ 2016. 10월까지 총 16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가평119안전센터 지방소방◈ ★★★ 등 구급대원 13명은 교대점검을 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감염관리실 일일점검을 총 128회 실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119구급차 영상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 제20조(일상점검), 제21조(관리 감독)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 재난대응과-10333(‘13.6.11.)호 「구급품질개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기록지 작성지침」
· 재난대응과-1744(2015.1.22.)호 「119감염관리실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알림」

(예산·회계)

①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미활용 등 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미활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의 수의계약 시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식당 증축 설계용역(추정가격 27,632천원)’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2인으로 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 받아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함.
- **〈일상감사 미실시 : 용역 2천만원 이상〉** 경기도 일상감사규정 제3조(대상업무) 및 제4조(감사 의뢰)에 의하면 “사업추진 전 사전지도를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 업무 중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소방행정과 지방소방★ ◇◇◇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식당 증축

설계용역(추정가격 27,632천원)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계약업무를 추진함.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 장치의 지정·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 경기도 일상감사규정 제3조(대상업무) 및 제4조(감사 의뢰)

②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준수 소홀

-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및 소집 교육 등 활동을 한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대장 기록부 및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원(회계장비팀장)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방소방◐ ◍◍◍(2016.01.13. ~ 현재)은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에서 예산회계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2016년 3개월 동안 각종 소방활동 및 교육·훈련 등에 동원된 의용소방대원 373명에게 소집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면서 “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라 “의용소방대 교육·훈련대장과 소방출동 기록부”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제로 소방활동 및 교육·훈련 등에 의용소방대원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의용소방대원 1인당 82,000원씩 3건 30,515,000원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예산에서 집행함.

【관련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등)
· 지방재정법 제31조(지출의 절차)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교육 및 훈련) 및 18조(소집수당 등)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예방·민원)

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 미이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1]과 수시교육[2] 중 수시교육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재난예방과 지방소방○ ◎◎◎ 등 3명은 “◈◈여학생 기숙학원”이 2017.5.1.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유지·관리 소홀로 조치명령이 발부 되어 수시교육 대상에 해당됨에도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아, 수시교육 이수 기한인 2017.7.31.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영업주 및 종업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②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업무처리 부적중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제1항의 사유 즉,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제1항에 의거하여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상2층, 영업장 면적 1,367.21㎡)”**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지상2층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가평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시에 적발되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라는 조치명령을 발급 받았으나, 공사업자 선정 등

---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영업주),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종업원)
2) **수시교육** : 다중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관계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였고, 가평소방서 담당자는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연기신청을 승인 하였으며, 또한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나, 기간이 경과되어(4일) 연기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및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수범사례 1 | 화재대응 취약마을 찾아가는 사랑방 Talk

❖ 재난대응 취약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화재안전의식 강화
❖ 원거리 재난대응 취약마을에 대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문제점

❍ 가평군 지역 특성상 재난대응 취약한 원거리 출동지역 다수 존재
❍ 골든타임 확보 곤란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 노인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맞춤형 소방서비스 도입 필요

중점 추진사항

❍ 119구급차량 이용방법 및 관외병원 이송 시 문제점 등 안내
❍ 119신고요령, 수보체계 현황 설명으로 소방에 대한 궁금증 해소
❍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사용법 설명
❍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속의 응급처치 및 CPR 교육 추진 등

주민과의 대화

소화기 사용법 교육

단독경보감지기 교육

CPR교육

기대효과

❍ 소방서장이 직접 찾아가는 사랑방 Talk로 주민신뢰도 향상
❍ 소방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소방에 대한 궁금증 해소
❍ 마을이장 등 관계자와 향후 소방시책 추진 네트워크 구축 등

수범사례 2 | 소규모 숙박시설(민박·펜션) 자율소방대 발대

❖ 가평군 관내 산재한 소규모 숙박시설(민박·펜션) 협회 차원의 자체 자율소방대 발대로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추진배경

❍ 지역 특성상 소규모 숙박시설(민박·펜션) 다수 산재(전국 1위)

❍ 업주의 안전의식 불감증(불법 건축물)으로 화재 등 안전관리 취약

❍ 원거리, 소로(小路) 등 열악한 출동환경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곤란

추진목표

❍ 화재발생시 자율소방대 통한 신속한 초기 현장대응

❍ 숙박업체 업주들에 사명감 부여를 통한 안전의식 개선

중점 추진사항

❍ 민박·펜션 협회 차원의 자율소방대 발대(168명)

❍ 업무, 관계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수료증 전달

❍ 안전점검표(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달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추진

가평소방서장 축사

심폐소생술 및 점검표 전달

발대식 기념촬영

자율소방훈련

기대효과

❍ 주민 자율 소방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자정노력 전개

❍ 자율소방대 주관 정기적인 화재진압 훈련을 통한 초기대응능력 향상

❍ 민·관 협업을 통한 소방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지역 안전문화 정착

수범사례 3 | 양수발전소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사업지 지원

❖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호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추진배경

❍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생활안전 도모

❍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생생하는 사회공헌 실천

❍ 환경 및 지역 여건상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곤란

중점 추진사항

❍ 지원내역 : 말하는 소화기 250개 (7,700천원), 단독경보형감지기 370개 (3,256천원)

❍ 심정지 환자 살리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결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장비, 자재, 인력 지원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훈련 지원

❍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협약서 서명

협약체결

업무협약 토론

기념촬영

기대효과

❍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통한 지역 안전문화 정착

❍ 말하는 소화기 보급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삶의 질 향상